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 —

2026. 5.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통보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환급	금액
7건			3	2	2	1	251	-	-	-	-
1	⊙⊙⊙⊙⊙⊙ ◇◇◇◇◇◇	생산물 매각업무처리 부적정	1	-	-		-	-	-	-	-
2	●●●●●●	생산물 관리에 대한 규정 미비	1	-	-		-	-	-	-	-
3	♡♡♡♡♡ 외 13개 부서	지식재산권(품종보호권·특허권) 관리 소홀	-	1	-	-	-	-	-	-	-
4	●●●●●● 외 9개 부서	연구시설장비 구매 부적정 및 이용료 규정 미비	1	-	-	-	-	-	-	-	-
5	♡♡♡♡♡ 외 4개 부서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	1	-	-	-	-	-	-
6	♡♡♡♡♡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	1	-	1	251	-	-	-	-
7	♡♡♡♡♡ 외 2개 부서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소홀	-	-	1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1.	생산물 매각업무처리 부적정(통보)	1
2.	생산물 관리에 대한 규정 미비(통보)	4
3.	지식재산권(품종보호권·특허권) 관리 소홀(시정)	6
4.	연구시설장비 구매 부적정 및 이용료 규정 미비(통보)	12
5.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주의)	16
6.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미가입(시정)	19
7.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소홀(주의)	21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생산물 매각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농업기술원 ㉮㉮㉮㉮ 산하 연구소에서는 시험연구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물 중 시험연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잔여 생산물에 대해 매각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불용처리 없이 매각 추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는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7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는 물품관리관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 및 ◇◇◇◇◇◇에서는 생산물의 매각 전

불용결정을 이행한 후 매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표 1]과 같이 총 9건 51,621천원의 생산물매각을 진행하면서 불용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1] 생산물 매각에 대한 불용처리 미이행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일 자	매각내역	계약상대자	판매대금	비 고
(The table body is currently empty, indicated by a diagonal line from the bottom-left to the top-right corner.)					

※ 자료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2항에는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는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과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 및 ◇◇◇◇◇◇에서는 매각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처분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생산물 매각 건에 대해서 [표 2]와 같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건 49,670천원의 생산물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였다.

[표 2] 생산물 수의매각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일 자	매각내역	계약상대자	판매대금	비 고
(The table body is currently empty, showing only a diagonal line from the bottom-left to the top-right corner.)					

※ 자료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연구용 농업 생산물에 대한 연간 생산량과 매각 등 처리계획 및 입찰 시 사전 판매처 확보 등의 걱정 판매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생산물 관리에 대한 규정 미비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내 용

농업기술원 ㉮㉮㉮㉮㉮ 소관 부서 및 연구소에서는 시험연구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하여 시험연구용으로 활용하거나 매각하여 세입조치하는 등 생산물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는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는 도지사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에서는 ㉮㉮㉮㉮㉮ 소관 부서 및 연구소의 시험연구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생산물 관리에 대한 일관된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표]와 같이 □□□□□□ 등 4개 부서에서는 생산된 생산물의 생산량 및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매각처리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물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산물 보고 및 처리에 대한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표] 생산물 보고 및 처리 업무 실태

부 서	연도별 생산물 보고 및 처리 업무 현황			
	2022	2023	2024	2025
(Blank area with diagonal line)				

※ 자료출처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생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식재산권(품종보호권, 특허권) 관리 소홀
소 관 청	농업기술원 ♡♡♡♡♡, ●●●●●, ♣♣♣♣♣, ○○○○○, ▼▼▼▼▼,
관 계 부 서	☞☞☞☞☞, □□□□□, ●○○○○, ♪♪♪♪♪, ♪♪♪♪♪, ○○○○○○○, ◇◇◇◇◇, ◁◁◁◁◁, ♠♠♠♠♠
내 용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기술 연구·지도를 위하여 품종을 육성하고 농업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에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1. 품종보호권·특허권 공유재산대장 미등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범위를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고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관리관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서는 2025. 4. 11.에 2025년 경상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통보하였으며, 2025. 5. 14.과 2025. 10. 16.에 두 차례 걸쳐 무형재산(무체재산 등)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장의 현행화를 협조 요청한 바가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종보호권 및 특허권이 실제와 공유재산 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대장의 작성·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농업기술원 ♥♥♥♥♥ 외 12개 부서에서는 2026. 4월 감사일 현재 까지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품종 개발한 ‘[문자표기]’ 등 25건의 품종보호권과 ‘[문자표기]’ 등 106건을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지 않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품종보호권 및 특허권 보유 현황

	계	품종보호권	특허권

※ 부서제출자료 재구성

2. 지식재산권(특허권) 권리 소멸 절차 부적정

「특허법」 제79조 및 제88조에 따르면,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

부터 특허료를 매년 1년분씩 내야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같은 법 제79조 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으며, 추가 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같은 법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한편, 경상북도 공무원인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경상북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 6년차 이상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활용평가(활용 계획, 활용가능성, 자체 활용 여부 및 지역 산업적 가치도) 등 검토를 통해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부쳐 권리포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020년에서 2022년에 등록된 ‘b b b’ 외 4건의 지적재산권(특허권)에 대하여는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서 자체 판단에 의해 특허 유지 종결(권리포기)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적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특허권 소멸 현황

부서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소멸일자	소멸방법
(Blank area for data)						

※ 부서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의 기회를 저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 ② 미등록된 지식재산권(품종보호권, 특허권)은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첨 1] 공유재산대장에 미등록된 특허권

	발명의명칭	출원번호	특허출원일	등록일자	담당부서
/					

[별첨 2] 공유재산대장에 미등록된 품종보호권

	출원일	출원번호	작물분류	품종명	등록일	소멸일	기타	소관부서
/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연구시설장비 구매 부적정 및 이용료 규정 미비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 ♪♪♪♪♪, ♪♪♪♪♪, ⊙⊙⊙⊙⊙⊙,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에서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 성과 확산을 위하여 농업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1. 연구시설장비 구매·구축 절차 미이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고시한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 제7조에 의하면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연구시설장비심의회 규정」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원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경상북도 예산으로 구입·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위의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구축비용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을 할 때에는 연구시설장비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구축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도, ●●●●●의 7개 부서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구시설장비 구매·구축에 있어 [표 1]과 같이 연구시설장비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12개(429백만원)의 연구시설장비를 부적정하게 구입한 사실이 있다.

[표 1]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구입한 장비

구분	구입 연도	부서명	장비명	대상 여부	심의회 여부	구입 여부	구입액 (천원)	비고
(This table content is redacted with a diagonal line.)								

※ 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규정 미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0조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나, 개별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상기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한 별도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 외 4개 부서에서는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표 2]와 같이 자체판단에 의해 85건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임의 면제하여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다.

[표 2] 이용료 미부과 현황

구분	활용도	부서명	장비명	장비가격	기관명	건수	사유	비고
(Blank table content)								

※ 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연구시설장비 심의 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장비 이용료 기준 없이 운영함으로써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료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 🎵🎵🎵🎵🎵, ◎◎◎◎◎◎, □□□□□
내 용


농업기술원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한 후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1절3.(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 공사를 발주한 농업기술원 ♥♥♥♥♥ 등 5개 부서에서는 시설 공사 등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만

했다.

그런데도, 농업기술원 ♥♥♥♥♥ 등 5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 등 담보 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2022년 하반기 1건, 2023년 상반기 2건, 2025년 상반기 13건과 하반기 1건의 시설공사(총17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표2]와 같이 7건의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1] 정기하자 검사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감독부서	계약업체	하자담보 보증기간	정기하자 검사 점검 내역							
				2025 상반기	2025 하반기	2024 상반기	2024 하반기	2023 상반기	2023 하반기	2022 상반기	2022 하반기
(The table body is currently empty, indicated by a diagonal line from the bottom-left to the top-right corner.)											

[표2] 최종검사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감독부서	계약업체	계약금액	하자담보 보증기간	최종하자검사여부 (14일전~만료일)
계					7건
(The main body of the table is currently empty, indicated by a diagonal line from the bottom-left to the top-right corner.)					

이로 인해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없거나 별도의 유지 보수비가 추가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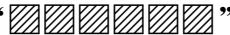
통 보 · 시 정 요 구

제 목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사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는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여야 하고,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까지 보험 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 ♡♡♡♡♡에서는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시 계약업체에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 대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감액 정산하거나 환수 조치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농업기술원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등 4건의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 완료 전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비에 계상되어있는 가입 비용(총251천 원)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설계용역 계약 현황

(단위 : 원)

연번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보험산정금액	요율(%)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② 과다 계상된 보험료 251,99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고, 설계용역 미가입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경상북도 지역개발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접생산증명서 확인 소홀
소 관 청 농업기술원
관 계 부 서 ♡♡♡♡♡, ◆◆◆◆◆, ♣♣♣♣♣
내 용

농업기술원에서는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에서 일괄 체결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한 중소기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¹⁾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행사 대행 용역 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계약 체결 시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다.

1)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3-7호(2023.2.1.)

번호	대분류	번호	제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특이사항
80	경영관련 서비스	801419	전시회, 회의 및행사대행 서비스	8014190201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한함
				8014198801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901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한함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한함

따라서, ◆◆◆◆◆ 등 발주부서에서는 1천만 원 이상의 행사 대행 용역을 체결할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무를 확인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과업을 맡겨야 하며, 계약부서인 ♥♥♥♥♥에서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 및 ♡♡♡♡♡ 등 발주부서에서는 3건(합계 53,550천 원)의 행사대행 용역에 대해 업체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계약을 요청하였으며, ♥♥♥♥♥에서도 자격 요건에 대한 실효적인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보유 업체 내역

(단위: 천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감독부서	직접생산 증명서유무
(This table is currently empty, showing only the header structure.)					

그 결과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